

1. 배경 및 목표

- 가. 국제공동연구 맞춤 지원체계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, 박사과정 이후 우수 학문후속세대를 선발하여 국제공동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및 연구비 지원
- 나. 해외 저명 연구자와의 네트워크 강화 및 해외 공동연구의 기틀 마련 및 국제기관과의 협력연구를 통해 높은 수준의 연구업적 창출을 독려하고, 해외연수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가진 대학원생 육성

2. 사업 추진 방안

- 가. 지원대상 :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 높은 수준의 연구 및 글로벌 역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한 자
- 나. 자격/지원조건
 - 1) 대한민국 국적이며 접수 마감일 기준, 본교 박사과정 및 박사수료자인 자
 - **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 및 박사수료자**
 - 해외연수 기간 중 박사학위 취득 계획이 없는 자
 - 2) 연수(연구)기관 : 해당 학문(전공)분야의 선진 지식이나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해외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기관(대학 또는 연구소)
 - 3) 지원 학문분야 : 경희대학교 대학원 설치학과의 전 학문(전공)분야

■ 신청 확인 및 제한사항

- ① 타대학 학위 취득자(예정자), 외국인 및 외국 국적(이중국적자 포함) 소지자 신청 불가
- ② 본 사업과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되는 타 재정지원사업 중복 연수지원 불가
- ③ 연수기간과 전문연구요원(병역특례자) 기간 중복 시 신청 불가
- ④ **최종 학술연구성과물(국제공동연구논문 등) 제출 이전 정년 또는 퇴직이 도래하는 지도교수의 추천은 지원 불가**

다. 지원내용 : 해외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협력연구 또는 연수를 다음과 같이 지원

- 1) 지원규모 : 1인당 총 3,000만원 내외
 - ※ 연수 선정자는 **1회만** 지원받을 수 있음
- 2) 지원기간 : 1년 (12개월)
 - 선정 이후 연수개시일 이전까지 출국해야함
 - 연수개시일 이전 출국하지 못할 경우, 사업비 반납 또는 본교 승인을 받아 출국일 연장 가능
 - 1년 이내에 중도 귀국할 경우, 항공료를 제외한 사업비를 월할 계산하여 반납
 - 연속적인 학업 및 연구 독려를 위해 지원 기간 종료 후 귀국 의무 없음
- 3) 지원금액(국외연수지원금) : 연수생 1인당 3,000만원 내외 지원
 - 연간 1인당 3,000만원 내외 지급(월 생활비 + 항공료 지원)(총 예산범위 내 일부 변경 가능)

지원항목	집행항목	지원금액	비고
지원내용	연구 인건비	월 2,000천원 * 12개월 = 연 24,000천원	인문사회 및 이공계열 동일
	항공료	6,000천원 이내	

※ 해외연수 성격의 정부 지원금 이중수혜는 불가함

3. 선정 및 평가방법

가. 선발체계 : 지도교수(본교 전임교원) 추천 및 대학원생 연수계획(정량+정성) 심사 후 선발

※ 지도교수 및 대학원생 학술연구실적 심사, 연수계획서 평가 등으로 진행

나. 선발일정 :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은 일부 변경 가능함

내용	일정	비고
	연수개시일 2025.03.01	
선정 공고 및 신청서 접수	~ 2024.10.27.(일)	
1차 심사 : 서면평가	~ 2024.11.15.(금)	
2차 심사 : 발표평가(온라인)	2024.11.18.~22 中 진행 예정	1차 서면평가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
선발대상 확정 및 통보	2024.11.29.(금)	

※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

다. 제출서류 : 별첨 1~8 양식 및 하기 서류

- 1) 연수계획서, 연수기관 확정 및 협의 근거자료(초청장, 연수계획 관련 교환 서신 등) 1부
- 2) The Brain 가입 및 연구활동 전체 탑재, 입력 연구실적자료 제출(다음의 실적은 별도 PDF 파일로 제출)
 - 연구실적에 기재한 논문의 표지 및 첫 장(저널명, 논문제목, 저자명이 표기되어야 함)
 - 연구실적에 기재한 특허 등록증(발급기관명, 특허 제목, 특허자명이 표기되어야 함)
- 3) 학부, 석사, 박사 성적증명서 각 1부

라. 제출방법 : 각 서류는 작성자 및 확인자를 날인하여 스캔 후, PDF 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구글폼으로 제출 (구글폼 링크 : <https://forms.gle/7QgVmn224pmz1V1t7>)

마. 심사방법

- 1) 심사위원회의 1차 평가 후 2차 발표심사(온라인)를 통해 객관성과 엄정성/투명성 확보
- 2) 모든 심사위원은 모든 과제(연수계획서)에 대해 점수 부여
- 3) 심사결과 최종 점수가 총점의 80점 이상 최고점수 순으로 선정

바. 평가지표

평가 항목		평가 내용	배점
정량 (50%)	신청자	- 본교 연구실적평정 규정에 의거 점수화 (※ 최종 학술연구성과물 제출 기한 이전에 정년 및 퇴직 기한 도래 지도교수는 사업 신청 불가)	25
	지도교수		25
정성 (50%)	신청자의 역량 및 연구 환경	- 신청자의 전공, 그간의 연구 및 학술활동 참여 경력이 해당 연수를 수행하기에 충분한가? - 제안한 연수를 주도적·독립적으로 수행할 충분한 역량이 있는가? - 연수 기관 및 환경이 신청자의 학업연구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적절한가?	20
	학업 및 연구계획의 적절성 및 연계성	- 학업 및 연수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으며, 실현 가능한가? - 현재의 학업 방향과 연수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, 우수한가?	20
	발전 가능성 및 기대효과	- 연수 결과가 향후 학술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가? - 지원을 받은 신청자가 우수 연구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연수결과 활용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가?	10
합계			100

※ 상기 항목은 대학원혁신지원사업단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

4. 유의사항

가. 연수비 관리

- 1) 연수비 지급 방법 : 지도교수(본교 전임교원) 교비 연구과제 생성 → 연수생 지급
- 2) 연수비 및 연구비 관리
 - 연수비 : 생활비 및 항공료(월별 균등액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정산 등)

나. 연수 관리

- 1) 선정 이후 연수개시일 이전까지 출국해야 하나,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기간 내 출국이 어려울 경우, 대학원 승인을 받아 출국일 연장 가능
- 2) 연수기간 동안 현지체류를 원칙으로 하며, 한국으로 일시 방문 또는 제3국 방문 시, 대학에 사전 신고하여야 함
- 3) 연수계획 변경 시, 변경신청서를 사전에 대학원으로 제출하여야 함

다. 결과보고

- 1) 착수보고서 : 연수국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(2025. 3월 이내)
- 2) 중간보고서 : 연수시간 절반 경과 시 제출(2025. 9월~10월)
- 3) 결과보고서, 출입국사실증명서 :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(2026. 3월 이내)
 - ※ 결과보고 미이행 시, 해외연수 지원금 전액 환수

5. 최종 학술연구성과물(의무사항) : 연수종료 후 1년 이내

가. 국제 학술지 게재 전체 논문 별쇄본 각 1부

- 1) **인문사회계(예체능계 포함)** : 국제1급(A&HCI 또는 SSCI급) 학술지 1편 이상
 - 2) **자연계(이공계, 의약계)** : 국제1급(SCIE) 이상 학술지 2편 또는 JCR 기준 상위 20% 이내 저널 1편 이상
- ※ 단, 진행 중인 논문인 경우 논문 게재확인서(accept 증빙) 제출
연구성과물 관련 특이 사항 발생할 경우, 소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음

나. 학술지 게재 시 사사표기(의무사항) : 국제공동연구 의무에 따라 타 기관 복수사사(공동병기) 가능

This research is (partially) funded by the BK21 FOUR program of Graduate School, Kyung Hee University. (GS-1-JO-NON-Info21연구과제번호)

▣ 유의사항

- ① 연수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된 성과물은 업적으로 인정하지 않음
- ② 연수중단 시에는 기 지급 연구비 전액환수 또는 기간을 고려한 최소 의무논문편수 제출의무를 적용함
- ③ 학위논문 제목과 일치하거나 발췌·요약 논문 인정 불가
- ④ 연수자가 연수를 중단하였을 경우, 향후 동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

다. 기타사항

- 1) 본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4단계 BK21 대학원혁신 사업운영지침 및 4단계 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 등을 준용하여 적용함.
 - ※ 경희대학교 4단계 BK21 대학원혁신(<https://igkh.khu.ac.kr/>) > 자료실 > 규정에서 운영지침 다운로드 가능
- 2) 그 밖의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결정